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목 차>

- 1.국제물류진흥지역 실증 특례 변경
- 2.임시허가 변경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 성 자	이름	권채훈
	담당부서 (과)	물류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심지영		연락처	044-201-3998
	과장	손덕환		이메일	in25090025@mail.go.kr

2026. 07. 23.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심지영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증 특례 변경								
	2.규제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3.위임법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06~2026.0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실증특례 변경신청 시 변경신청서 외 제출서류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td><td>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								
9.규제목표	실증특례, 임시허가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실증특례 변경의 합리성 및 사업자들의 행정적 예측가능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미해당 미해당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실증특례 변경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실증특례 변경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규정
	내용	- 변경신청 시 신청서 외에 사유서, 결과보고서 등 추가 제출서류 규정 - 실증특례 변경 시 합리성 제고
규제대안2	대안명	실증특례 변경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비규제
	내용	- 변경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26.8.6 ~ 9.15 입법예고		

3. 규제목표

- 실증특례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규제특례 변경의 합리성 및 사업자들의 행정적 예측가능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규정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 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제10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규정한 것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추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26.4.7 제정, '27.4.8. 시행)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하위법령 제정
 -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종합결론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실증특례 변경을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임시허가 변경								
	2.규제조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위임법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8.06~2026.09.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임시허가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td><td>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사업 유형 및 규제특례 적용 양상에 따라 다양하여 특정하기 곤란								
9.규제목표	실증특례, 임시허가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규제특례 변경의 합리성 및 사업자들의 행정적 예측가능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미해당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변경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시허가서 사본 5.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에 필요한 사항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규제대안1	대안명	임시허가 변경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규정
	내용	- 임시허가 변경 시 변경신청서 외에 추가 제출서류 규정 - 임시허가 변경의 합리성 및 사업자의 행정적 예측 가능성 제고
규제대안2	대안명	임시허가 변경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비규제
	내용	- 임시허가 변경 시 변경신청서 외에 추가 제출서류 비규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	'26.8.6. ~ 9.15. 입법예고		

3. 규제목표

- 임시허가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규제특례 변경의 합리성 및 사업자들의 행정적 예측가능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규정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사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임시허가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요구하며 유사입법례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를 활용한 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추가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를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26.4.7 제정, '27.4.8 시행)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제정
-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하위법령 제정
 -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8)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종합결론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임시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외 변경계획서, 결과보고서, 임시허가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임시허가 변경을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7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임시허가 변경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임시허가 변경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규정>